

개정 전	개정 후
<p>③ <u>제2항 전단에 따라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차감할 수 있다.</u></p>	<p><u>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이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.</u></p>
<p>④ <u>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차감액의 계산 방법, 이월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</p>	<p><u>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-----.</u></p>